

2010. 6.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

#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[www.nec.go.kr](http://www.nec.go.kr)





일 러 두 기

# PREFACE



이 책자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이해를 높이고, 적법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것입니다.

정당·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는 기 배부한 『알기 쉬운 정치자금 회계 실무』책자를 활용하여 회계처리 하시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의 구분, 선거비용 보전대상 여부등에 대한 사항은 본 책자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,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본 회계실무 책자 원고는 『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([www.nec.go.kr](http://www.nec.go.kr))-정보광장-정치자금정보-정치자금자료』란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---

##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

---

<b>I.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회계사무 주요일정</b>	0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---

## II.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보전제한·반환

---

1. 선거비용 보전청구	03
--------------	----

2.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	04
-------------------	----

---

## III. 선거비용 및 보전대상 여부 문답 풀이

---

1.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	05
----------------------	----

2.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	15
--------------------	----

3. 시설물·인쇄물 등	18
--------------	----

4. 공개장소 연설·대담	24
---------------	----

5. 전화이용 선거운동	26
--------------	----

6. 신문·방송·인터넷 등 이용 선거운동	30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7. 기 타	31
--------	----

8. 선거비용 보전제한·유예	33
-----------------	----

---

## IV.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항목 일람표

---

### V.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결정내역

---

1.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선정기준	67
---------------------	----

2. 세부 항목별 결정내역	68
----------------	----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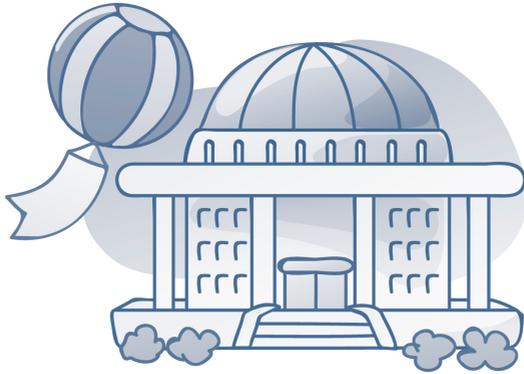


## I.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회계사무 주요일정

- ❖ 선거일 : 2010. 6. 2(수)
- ❖ 선거운동기간 : 2010. 5. 20(목) ~ 6. 1(화)(13일간)
- ❖ 예비후보자 등록
  - 시·도지사선거, 교육감선거 : 2010. 2. 2(화)부터
  - 지역구 시·도의원선거, 자치구·시의 지역구의원 및 장선거 : 2010. 2. 19(금)부터
  - 자치군의 지역구의원 및 장선거 : 2010. 3. 21(일)부터
  - 교육의원선거 : 2010. 2. 26(금)부터
- ❖ 본 선거 후보자등록 : 2010. 5. 13(목) ~ 5. 14(금)
- ❖ 회계사무 주요일정

주요 회 계 사 무	일 정	담당주체
■ 선거비용제한액 결정, 공고	1. 22(금)	관할 선거구선관위
■ 회계책임자 선임·신고 및 예금계좌 신고	(예비)후보자 등록신청시	(예비)후보자, 시·도당의 대표자
	선거연락소 설치신고시	선거연락소장
	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	정당선거사무소장

주요 회계 사무	일 정	담당주체
■ 정치자금 수입·지출내역의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구비	수입·지출 건 발생시마다	회계책임자
■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	6. 14(월)까지	후보자, 시·도당대표자, 정당선거사무소장
■ 정치자금 수입·지출 회계마감	6. 22(화)까지	회계책임자
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	7. 2(금)까지	회계책임자
■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		관할 선거구선관위
■ 선거비용 추가 보전청구	회계보고서 제출시	회계책임자
■ 정치자금 수입·지출내역 실사	별도 일정통지	관할 선관위
■ 선거비용 등 보전·지급	8. 1(일)까지	관할 선거구선관위



## II.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보전제한 · 반환

### 1. 선거비용 보전청구

❖ 청구기한 : 2010. 6. 14(월)까지

**\* 청구내역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 청구 가능**

❖ 청구권자 : 정당, 후보자

❖ 보전요건

-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

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

**\*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**

-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

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

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

**\*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**

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

**\*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**

❖ 청구내역 확인 및 지급

- 청구내역 확인

보전비용 지급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청구내역 진실성여부 확인

- 보전비용 지급

2010. 8. 1(일)까지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

## 2.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

❖ 보전제한 주요사유

- 「공직선거법」에 정해진 후보자의 득표수 등 보전 요건 미달 시

-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

-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「공직선거법」 등 위반 시

❖ 선거비용 반환대상

- 보전비용 지급 후 착오 지급된 보전비용 발견 시

-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후보자가 「공직선거법」 위반으로 당선무효,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 확정 시

-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

\* 자세한 사항은 「알기쉬운 회계실무 VIII.

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」 참조



### Ⅲ. 선거비용 및 보전대상 여부 문답풀이

#### 1.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

#### Q-0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?

당해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(금전·물품·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)으로서

① 당해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,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)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

❖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

**선거사무소(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)나 선거연락소에 설치·게시하는 간판·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·게시·철거에 소요되는 비용**

- 선거사무소에 LED(동영상 표출은 제외)를 이용한 간판·현판·현수막 설치시 그 제작비용

- 고층건물에 현수막 등 설치·철거에 따른 특수장비(고가사다리차 등) 임차비용
-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
-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·보완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·보완된 현수막 등의 제작·설치·철거비 등

#### **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·실비**

-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·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·실비(숙박비 제외)
- 후보자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·신고하고 지급한 수당·실비
-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취사비 등

#### **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·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과 선거벽보의 보완첩부비용**

- 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 기획·도안료, 인쇄료
- 선거벽보·선거공보를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- 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의 제작과 관련한 교정비용(기획·도안료에 포함)

- 선거벽보·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
-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발송용봉투 작성비와 우편발송비용
- 오·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첩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부임 등

#### **거리 게시 현수막 제작 및 설치·게시·철거에 소요되는 비용**

- 현수막 제작·게시비·철거비
-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현수막 등의 제작·설치·철거비
-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부득이 개인소유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급한 사용료(통상적인 거래가격) 등

#### **어깨띠, 표찰·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의 구입·제작 등 비용**

- 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, 윗옷·모자 등 소품 착용자[후보자 및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]가 사용한 어깨띠, 윗옷·모자 등 소품(이하에서 '어깨띠 등 소품'이라고 함) 제작비
- 선거운동용 윗옷을 교체 사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운

등에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

-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어깨띠 등 소품의 제작비
- 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(실제 착용가능한 수 범 위내에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) 등

#### **신문·방송·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**

- 신문·방송·인터넷광고 기획·도안·제작·광고비
- 방송연설의 제작비·방송료
- 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 또는 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에 지불한 분장비
-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·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

#### **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에 소요되는 비용**

- 공개장소 연설·대담차량 임차비
- 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·도안료 및 설치·철거비
-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
- 공개장소 연설·대담차량 기사임

- 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연단 제작비
- 공개장소 연설·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
-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·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
- 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차량의 유류비, 유료통행료,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도선료
- 확장장치·녹화기 임차비 또는 수리비
- 로고송 제작비
- 공개장소 연설·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홍보물의 CF·애니메이션 등 기획·도안료, 제작비
- 공개장소 연설·대담차량에 설치된 녹화기를 통하여 방영하는 홍보물에 수화통역을 함께 방영하는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등

###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

- 임시전화 임차료, 설치·기본료, 통화료(문자메시지 전송요금 포함)
- 후보자와 그 배우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(문자메시지 전송요금 포함)
-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횟수 5회(예비후보자로서 행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하되 보전하지 아니함) 이내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

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

-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컴퓨터, CTI 전용전화기, 네트워크 장비, 소프트웨어 임차료
-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 등

#### **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용**

- 명함(점자형 명함 포함) 제작비

#### **전자우편,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**

- 전자우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의뢰한 경우 그 전자우편발송요금
-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
-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·관리·업데이트 비용

#### **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**

#### **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**

-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(교육의 원선거에서는 후보자마다 각 5대 이내. 이하에서 같음) 선거벽보·선거공보 첨부·철거비
-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거벽보 코팅비
-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등

❖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

❖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

- ② 정당,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,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(추천정당 포함)의 선거운동(위법선거운동을 포함)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
- ③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·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(추천정당 포함)의 선거운동(위법선거운동 포함)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
- ④ ② 및 ③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(추천

정당 포함), ② 또는 ③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(추천정당 포함)의 선거운동(위법선거운동 포함)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

## Q-02

###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?



- ❖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
  -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(선거권자 추천장 인쇄비용 등)
  -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하기 위한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
  - 정책·공약 개발 등 선거운동기획에 소요되는 비용
  - 선거운동 준비 등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
  - 방송연설 시연에 소요된 비용 등
- ❖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
- ❖ 선거에 관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
  -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비용
  -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
  - 주차위반 과태료, 교통법칙금

- 선거비용의 계좌입금·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수표발행 수수료 등
- ❖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·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
  - \*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·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,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·수도료 기타 유지비는 선거비용임.
- ❖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
  -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,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
  -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,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,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
  - 책상 및 의자 등 OA 임차·구입·설치비
  - 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 내부 수리비
  -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의 선거운동용 전화 키폰 공사비
  - 선거사무소 등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
  - TV, 복사기, 프린터, 정수기, 냉·난방장치 등 설치·유지·구입·임차비
  -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
  - 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·고무인 등 제작비
  -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
  - 선거사무소 등의 생수·휴지·쓰레기 봉투 구입비

- 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·첩부·철거비
-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·잡지 등 구독료
-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·유지비
- 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
-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·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등

- ❖ 정당, 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회계책임자, 연설원 및 대담·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
- ❖ 공직선거법 제91조(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)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벽보등 첩부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의 운영비용
  -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·유류비·기사인건비·수리비 등
- ❖ 제3자가 정당·후보자·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
- ❖ 선거법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
- ❖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(부담비용)
  - 점자형 선거공보 등 인쇄비 등

- 장애인(예비)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(활동보조인은 1명만 둘 수 있으며 선임신고 하여야 함)에게 지급한 수당·실비
- ❖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
-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담당하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일 후에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비용 등

## 2.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

**Q-03** 선거사무관계자가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그 식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? 

- ❖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사목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(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선거사무안내 책자 P39 참조, 교육감·교육의원선거 사무안내 책자 P29 참조)에게는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경비는 적법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로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

\* 다만, 위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제공받은 끼니만큼의 식비(끼당 6,660원)를 공제하고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
**Q-04**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는 보전대상인가요? 

❖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는 선거비용에 해당하나 보전대상이 아닙니다. 이 경우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식사 대용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.

**Q-05** 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? 

❖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아닙니다.

**Q-06**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취사인부임 및 부식구입비는 선거비용인가요? 

❖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선거사무장등에게 제공하는 실비(식비)의 범위내에서

취사인부 고용 및 쌀·반찬 등 부식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, 실비(식비)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보전합니다.

**\* 다만, 취사비 총액(취사인부임, 취사도구·주방기구 임차비, 주식 및 부식 구입비, 가스 등 연료비)이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선거운동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.**

**Q-07**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수당·실비 기타 이익 제공시 보전대상인가요? 

❖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사무장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당 또는 실비 기타 이익제공 시 위법비용에 해당되며 보전대상이 아닙니다.

**\* 선거사무관계자를 회계사무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.**

**Q-08** 선거사무소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칸막이 설치비는 보전대상인가요? 

❖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보전대상이 아닙니다.

### 3. 시설물 · 인쇄물 등

**Q-09**

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게시 현수막, 거리게시 현수막을 교체하여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인가요? 

- ❖ 오·훼손 또는 디자인이나 문구의 교체 등의 사유로 교체 제작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대상입니다.

**Q-10**

선거사무소 내부 게시물은 선거비용 보전대상인가요? 

- ❖ 선거사무소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선거사무소 내부에만 게시하는 각종 홍보물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전대상이 아닙니다.

**Q-11** 거리게시 현수막의 이동게시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인건비 등의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? 

- ❖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이동게시한 경우 현수막 제작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이동게시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.

**Q-12**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? 

- ❖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입니다.

**Q-13** 선거사무소에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디자인이나 게시문구를 바꿔 새로 제작 게시한 경우 새로 만들어 게시한 현수막의 제작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? 

- ❖ 게시된 현수막이 오·훼손되거나, 디자인, 게시문구 등을 바꿔 새로 현수막을 제작·게시하였다면 이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

Q-14

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제작·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사용한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 

- ❖ 간판 등의 제작비용을 총 게시일수로 나눈 후 선거운동기간중 게시일수를 곱한 금액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(일할계산) 다만, 선거운동기간 중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한 간판·현판·현수막 비용만 보전합니다.

Q-15

선거일후 현수막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? 

- ❖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한 현수막 제작비(P68참조)에는 기획·도안료 및 설치·철거비가 포함된 금액이며, 만일 당초 설치 계약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수막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.

Q-16

선거운동용 윗옷(기부행위에 이르는 형태는 아님)등을 여러 종류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제작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? 

- ❖ 「공직선거법」 제68조에 의한 어깨띠, 윗옷 등 선거운동 소품을 여러 종류 제작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면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.

## Q-17 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나요?

- ❖ 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의 제작비 중 기획·도안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보전하며, 인쇄비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금액 범위내에서 보전합니다.

## Q-18 오·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첩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통상적인 인부임은 보전대상인가요?

- ❖ 선거벽보 재첩부관련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.

## Q-19 점자형선거공보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는가요?

- ❖ 점자형선거공보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됩니다.
- ❖ 점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에게는 아래 기준에 의해 산출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해 드리고 있습니다.
  - 1,000매 이하 인쇄의 경우 : 매당 600원(양면)
  - 1,000매 초과 인쇄의 경우 : V.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2.
 점자형선거공보 제작비 참조 (P73)

Q-20

점자형선거공보의 경우 도안·칼라 또는 색지 등으로 인쇄한 경우도 부담해 주는지요? 

- ❖ 점자형선거공보를 도안·칼라 또는 색지 등으로 인쇄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 작성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시각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로서 해당비용은 부담비용에서 제외합니다.

Q-21

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명함을 만들어 배부하고 후에 후보자 등록후에도 예비후보자때 제작하였던 명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보전은 어떻게 되는지요? 

- ❖ 총 인쇄비(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하여 원가계산후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원가계산금액을 말함)를 인쇄수량으로 나눈 후 선거운동기간중 실제 배부 사용한 매수를 곱한 금액만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❖ 후보자는 총 인쇄 수량,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 사용한 수량, 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 사용한 수량, 잔여 수량을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기재된 「명함 사용 내역서」와 관련 인쇄비용 증빙서류를 선거비용보전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명함 사용 내역서

1. 선거명(선거구명) :
2. 소속정당명 :
3. 후보자명 :
4. 명함 인쇄 및 사용 내역
 

가. 총 제작 수량 :	매
나.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한 수량 :	매
다. 선거운동기간중 배부한 수량 :	매
라. 잔여수량 :	매
5. 보전청구액
 

가. 총 인쇄비용 :	원
나. 매당 단가 :	원
다. 청구금액 :	원(매당단가×선거운동기간 중 배부한 수량)

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 명함 제작 사용 내역 및 보전청구액을 위와 같이 소명합니다. 아울러, 위법·부당한 사용 내역 보고 및 청구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귀 위원회에 반환하는 등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.

붙임 명함제작 인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

2010년    월    일

청구인	후보자	인
	선거사무장	인
	회계책임자	인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#### 4. 공개장소 연설 · 대담

**Q-22** 로고송 제작시 저작재산권료 및 저작인격권료도 선거비용 보전대상인가요? 

- ❖ 로고송 제작 비용은 선거비용이며 저작재산권료, 저작인격권료, 제작비로 구성됩니다.
- ❖ 저작재산권료란 원래의 곡을 개사·편곡없이 복제하여 대중에게 사용하고자 할 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전 지불하는 비용으로 선거별 사용액은 P71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- ❖ 저작인격권료란 원래의 곡을 개사 또는 편곡하고자 할 때 해당 저작권자(작사·작곡가)에게 사전 동의를 득하고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말합니다.

**\* 다만, 불법사용에 따른 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.**

**Q-23** 공개장소 연설·대담 차량의 홍보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·도안료는 보전대상인가요? 

❖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.

**Q-24**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·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보전대상인가요? 

❖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.

**Q-25**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자동차·확성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 보전 받을 수 있는가요? 

❖ 선거일후에도 자산가치가 남거나 활용이 가능한 자동차·확성장치 그 밖의 내구재 구입비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.

**Q-26** 선거운동용 자동차(공직선거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여 선거벽보 등 첩부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함)에 선거벽보 첩부·철거에 따른 차량훼손 수리비는 보전대상인가요? 

❖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아닙니다.

## 5. 전화 이용 선거운동

Q-27

선거사무소에 임시전화를 설치한 후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유권자와 유선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 보전받을 수 비용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? 

- ❖ 선거사무소에 임시전화를 설치한 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이는 적법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임시전화의 설치에 따른 설치비와 선거운동기간중의 기본료 및 통화료(시내·외 통화료 불문,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포함)는 모두 선거비용이며, 선거비용 보전대상입니다.
- ❖ 임시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사무소에 기 설치된 일반전화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선거운동에 사용한 통화료에 관한 입증자료(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청구서,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, 직전 3개월간의 평균통화료 산출자료)와 정확한 청구금액(선거

운동기간중의 통화료-직전 3개월간의 통화료를 일할 계산한 후 선거운동기간 일 수 만큼을 곱한 금액)을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*\* 선거사무소에 기 설치된 일반전화를 사용할 경우 보전청구할 통화료 산출, 증빙서류 구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화이용 선거운동에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.**

- ❖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에게 소정의 법정수당·실비 외에 추가로 금품 등 보상을 하거나,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Q-28

선거운동기구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나요? 

- ❖ 「공직선거법」 개정 전에는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의 경우 그 비용은 보전하지 않았으나, 2010. 1. 25 법 개정에 따라 수신받는 전화가 유선전화인지, 휴대전화 인지를 불문하고 그 통화료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입니다.
- ❖ 따라서 선거운동기구에 설치한 전화로 선거권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통화료는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

**Q-29**

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, 선거권자에게 전화를 걸어(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)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나요? 

- ❖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료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아니나, 후보자와 그 배우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, 이를 후보자가 부담하였다면 그 통화료는 보전합니다.
- ❖ 다만, 후보자가 휴대전화를 임차하여 위 대상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그 휴대전화 통화료외에 휴대전화 임차료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.

**Q-30**

보전되는 휴대전화 통화료에는 문자메시지 전송료도 포함되나요? 

- ❖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료도 휴대전화 통화료에 포함됩니다.

**Q-31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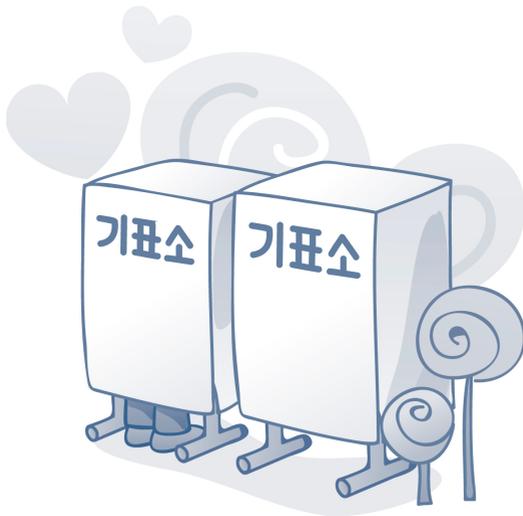
전화통화료는 모두 보전대상인가요? 

- ❖ 유선전화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전화의 통화료(설치료 등 포함)만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대상입니다.

- ❖ 휴대전화의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만 보전대상입니다.

**Q-32**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 연결음 제작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? 

- ❖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입니다.



6. 신문·방송·인터넷 등 이용 선거운동

**Q-33** 인터넷홈페이지 운영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? 

❖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나 보전대상이 아닙니다.

**Q-34**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는 보전대상인가요? 

❖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입니다.

**Q-35** 신문광고비용 또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인가요? 

❖ 신문광고비용 또는 방송연설비용은 선거기간중 상업·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므로 최저요금 범위 내에서 보전합니다.

**Q-36** 신문광고 및 인터넷 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는 보전대상인가요? 

❖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입니다.

## 7.기 타

**Q-37**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? 

- ❖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이 아닙니다.

**Q-38** 당내경선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는가요? 

- ❖ 적법한 당내경선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❖ 다만,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법에서 정한 경선 운동 방법에 위반되는 비용은 위법선거비용으로 보고 있으며,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이라 하더라도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는 당내경선 소요비용은 위법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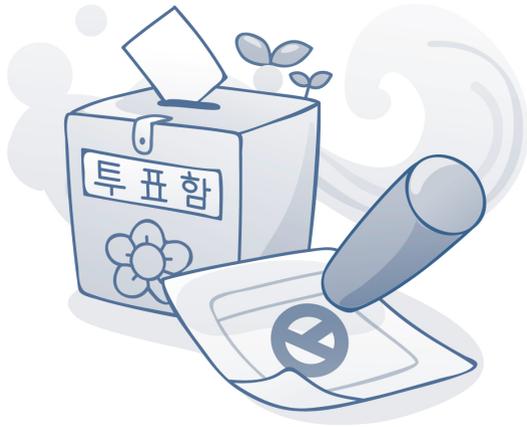
**Q-39** 정책·공약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인가요? 

- ❖ 정책·공약 개발 등 선거운동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운동 준비행위로 보아 선거비용이 아닙니다.

Q-40

보전비용은 2010. 6. 14(월)까지 청구하되, 누락된 경우 회계보고마감일인 2010. 7. 2(월)까지 추가 청구하면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, 이 경우 2010. 7. 2(월)에 일괄 청구하여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는지요? 

- ❖ “누락”과 “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”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.
- ❖ 2010. 6. 14(월)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청구내역이 누락된 경우 회계보고 마감일까지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.



## 8. 선거비용 보전제한 · 유예

### Q-41 선거비용 보전이란 무엇인가요?

- ❖ 후보자(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)가 「공직선거법」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비용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# Q-42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인가요?

- ❖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모두를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- ❖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(2010. 7. 2)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않습니다.

❖ 『공직선거법』 및 『공직선거관리규칙』에서 정하고 있는 보전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1.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

-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별도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급한 수당·실비 등

#### 2.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

#### 3.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

-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(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) 임차·설치·유지비
- 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 제작매수를 초과 인쇄한 경우 그 초과 인쇄비
-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방송연설 비용
- 공개장소의 연설·대담을 한 사람(연설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설·대담을 하게 한 경우와 일반인이 후보자 등의 지정을 받아 연설·대담을 한 경우를 포함)에게 지급하는 사례금
- 선거사무관계자에게 『공직선거법』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·실비 그 밖의 비용 등

#### 4.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
### 5. 정당한 사유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

- 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 제작업체가 일반과세사업자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경우 등

### 6.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

- 과거 선거시 사용하였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
- 과거에 찍어둔 사진 또는 사진원판(필름)을 사용하여 선거벽보 게재용 사진을 제작한 경우
- 정당·후보자·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·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등
- ※ 무투표 당선인이 후보자등록 마감전에 이미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작한 경우 그 제작사실을 입증하여 해당금액을 보전청구할 수 있음.

### 7. 청구금액이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초과하 는 가액의 비용

-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은 P67 이하 참조

### 8.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·장비·물품 등의 임차·구입·제작비용

- 방송연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등

### 9.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 요금

- 다만, 후보자와 그 배우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

### 10.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

-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·관리·업데이트 비용 등

### 11.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비용

### 12.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

### 13. 선거일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·실비

### 14.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

**Q-43** 어떤 경우에 2배의 선거비용보전이 제한되는가요? 

❖ 후보자·예비후보자·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「공직선거법」 또는 「정치자금법」 제

49조(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)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보전되며,

- ❖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미보전됩니다.

## Q-44 어떤 경우에 2배의 선거비용 보전이 유예되는가요?

- ❖ 후보자·예비후보자·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「공직선거법」 또는 「정치자금법」 제 49조(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)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기소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 유예되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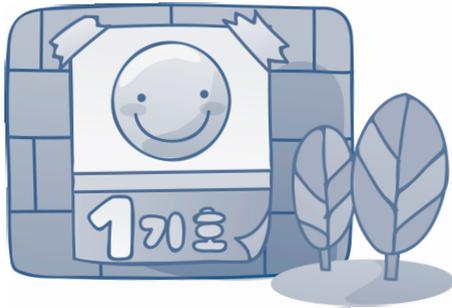
- ❖ 후보자·예비후보자·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「공직선거법」 또는 「정치자금법」 제 49조(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)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 유예 됩니다.

**Q-45** 어떤 경우에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제한 되나요? 

- ❖ Q44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당, 후보자, 예비후보자 및 그 가족, 선거사무장, 선거사무원,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보전 됩니다.

**Q-46** 보전제한과 보전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 

- ❖ 보전제한은 해당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며,
- ❖ 보전유예는 해당 선거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.



## IV.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항목 일람표

\* 이 예시는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, 법규개정이나 선례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.

### 당내경선(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제외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57조의3 (당내경선 운 동)	예비후보자등록후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선운동비용			○	
	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위반되는 경선운동비용		○		

### 인터넷홈페이지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5 9 조 (선거운동 기 간)	인터넷 홈페이지 제작·관리·업데이트 비용		○		
	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인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자를 상주시키고 그에게 지급한 인건비(위법비용)		○		

###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60조의3 (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)	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,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			○	
	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,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섨팅비,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			○	
	책상 및 의자 등 OA구입·설치비			○	
	칸막이 등 내부구조물 설치 및 철거비 등 내부 수리비			○	
	TV, 복사기, 전화기, 프린터, 정수기, 냉·난방장치 등 설치·유지·구입·임차비			○	
	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			○	
	각종 인영·고무인 등 제작비			○	
	선거사무소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			○	
	선거사무소의 생수·휴지·쓰레기봉투 구입비			○	
	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			○	
	선거운동과 관련한 도서 구입비			○	
	선거사무소의 냉·난방용 연료비			○	
	선거사무소 내부의 선거홍보물 제작·첨부·게시비			○	
	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·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서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		○		
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·수도료 기타 유지비		○			
선거사무소 등의 신문·잡지 등 구독료			○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60조의3 (예비후보자 등 의 선거운동)	선거사무소 등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·유지비			○	
	선거사무소 이전비			○	
	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 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		○		
	컵라면, 통닭, 족발, 담배 구입비 (위법비용)		○		
	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·당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 에서 선거사무소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			○	
	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 잡무처 리(차대접, 청소 등)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			○	
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 (전화홍보를 위한 별도 의 사무소 등) 임차·설치·유지비 (위법비용)		○			

**예비후보자 법정 간판·현판·현수막(간판 등이라 함)**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60조의3 (예비후보자 등 의 선거운동)	선거사무소의 간판·현판·현수막 제작·설치· 철거비		○		
	건물 외벽면에 현수막 설치를 위해 지급된 정당한 사용료		○		
	과거 선거시 사용했던 간판·현판·현수막을 재사 용하는 경우 그 통상적인 제작비		○		
	간판 등을 교체·보완하는 경우 제작·설치비		○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	간판 등을 제작·설치·철거시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래한 비용		○		

### 예비후보자 명함(길이 9cm 너비 5cm 이내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60조의3 (예비후보자 등 의 선거운동)	명함(점자형 명함 포함) 제작비		○		
	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일부만 배부 하고 중지한 경우 명함 전체 제작비용		○		

### 예비후보자 전자우편·전화·문자메시지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60조의3 (예비후보자 등 의 선거운동)	인터넷 설치·유지비		○		
	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		○		
	전화 설치비				
	- 임시전화 설치·기본료		○		
	- 임시전화기 임차료		○		
	전화 통화료(선거운동용 전화기는 임시전화 사용 을 원칙으로 함)				
	- 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 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전화(휴대전화 포함) 통 화료			○	
문자메시지 전송			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60조의3 (예비후보자 등 의 선 거 운 동)	- 문자(문자 외의 음성·화상·동영상 등은 제외)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		○		
	- 문자외의 음성·화상·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(위법비용)		○		
	-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 수 5회(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는 후보자로서 행하는 횟수에 포함됨. 이하에서 같음) 이내에서 전송한 경우 그 전송에 소요된 비용		○		
	-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 수 5회를 초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과 전송에 소요된 비용(위법비용) *예비후보자로서 법정횟수 5회를 모두 전송한 경우 후보자로서는 전송할 수 없음		○		

**예비후보자 홍보물(세대수의 10/100 이내)**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60조의3 (예비후보자 등 의 선 거 운 동)	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비(기획·도안료, 인쇄료)		○		
	홍보물 봉투 제작비, 발송 소모품비, 발송 우편요 금, 반송된 경우의 재발송 우편요금		○		
	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지불한 홍보물 발송비		○		
	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라벨첨부, 봉투봉 합 작업 등에 종사한 인부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		○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	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교부비			○	

### 예비후보자 어깨띠 및 표지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60조의3 (예비후보자 등 의 선거운동)	예비후보자의 어깨띠 · 표지 이용 선거운동에 소요 된 비용 - 어깨띠 :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- 표지 :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		○		

### 예비후보자공약집(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60조의4 (예비후보자 공 약 집)	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			○	

### 후보자의 선거사무소(선거연락소 포함, 이하 '선거사무소 등' 이라 함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6 1 조 (선거운동기 구의 설치)	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,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 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			○	
	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, 차광용 또는 외부차 단용 선팅비,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			○	
	책상 및 의자 등 OA 임차 · 구입 · 설치비			○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6 1 조 (선거운동기 구의 설치)	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 내부 수리비			○	
	선거사무소 · 선거연락소의 선거운동용 전화 키폰 공사비			○	
	선거사무소 등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 비한 칸막이 설치비			○	
	TV, 복사기, 프린터, 정수기, 냉 · 난방장치 등 설 치 · 유지 · 구입 · 임차비			○	
	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			○	
	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 · 고무인 등 제작비			○	
	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			○	
	선거사무소 등의 생수 · 휴지 · 쓰레기 봉투 구입비			○	
	선거사무소 등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			○	
	선거운동과 관련된 도서 구입비			○	
	선거사무소 등의 냉 · 난방용 연료비			○	
	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 · 첨부 · 철 거비			○	
	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 · 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	○			
	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 · 수도료 기타 유지비	○			
	선거사무소 등의 신문 · 잡지 등 구독료			○	
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 의 설치 · 유지비			○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6 1 조 (선거운동기 구의 설치)	선거사무소 등의 이전비			○	
	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		○		
	컵라면, 통닭, 족발, 담배 구입비(위법비용)		○		
	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 비용			○	
	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·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			○	
	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 잡무처리(차대접, 청소 등)를 담당할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			○	
	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(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) 임차·설치·유지비(위법비용)		○		

선거사무소 등의 간판·현판·현수막, 선거벽보, 선거공보, 선거공약서, 선거벽보 규격 2배 이내의 크기의 후보자만의 사진(이하 이 조에서 간판 등이라 함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6 1 조 (선거운동기 구의 설치)	선거사무소 등의 간판·현판·현수막의 제작·설치비·철거비	○			
	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LED(동영상 표출은 제외)를 이용한 간판·현판·현수막 설치시 그 제작비용	○			
	고층건물에 현수막 등 설치·철거에 따른 특수장비(고가사다리차 등) 임차비용	○	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6 1 조 (선거운동기 구의 설치)	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	○			
	통상적인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의 기획·도안료 외에 별도의 기획·도안료		○		
	현수막의 기획·도안과 현수막 제작을 별개의 업체와 계약한 경우 현수막 기획·도안료(현수막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분은 보전하지 않음)	○			
	야간에 선거사무소 외벽을 비추기 위해 설치한 조명 설치비용			○	
	선거일 후에 선거사무소 간판 등의 철거(당초 설치 계약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)에 소요된 비용	○			통상적인 거래가격
	과거 선거시 사용하였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		○		통상적인 제작비
	예비후보자 시절 제작·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설치한 간판·현판·현수막의 제작·설치비(다만, 선거운동기간 중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한 간판·현판·현수막 비용만 보전)	○			일할계산
	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·보완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·보완된 현수막 등의 제작·설치·철거비	○			
	법정 수량을 초과한 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의 설치·철거비(위법비용)		○		
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첨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		○			

선거벽보(비례대표선거 제외), 책자형선거공보, 선거공약서(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	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 기획·도안료, 인쇄료	○			
	선거벽보·선거공보를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		○		
	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(실거래가격을 보전함)	○			통상적인 거래가격
제 6 4 조 (선거 벽보)	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(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)	○			실거래 가격
제 6 5 조 (선거 공보)	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 제작업체가 일반 과세사업자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경우		○		
제 6 6 조 (선거공약서)	후보자측 잘못으로 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선거벽보·선거공보 원고 기획·도안료, 인쇄료		○		
	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의 제작과 관련한 교정비용(기획·도안료에 포함)	○			
	선거벽보·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	○			
	내용이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은 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의 각 기획·도안료	○			
	점자형 선거공약서의 발송용봉투 작성비와 우편발송비용	○	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	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			○ (부담)	
제 6 4 조 (선거 벽보)	오·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접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부임	○			
제 6 5 조 (선거 공보)	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공약서 제작매수를 초 과인쇄하여 제공한 경우 그 초과 인쇄비(위법비용)		○		
제 6 6 조 (선거공약서)	선거공보·선거공약서에 게재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비용	○			
	과거에 찍어둔 사진 또는 사진원판(필름)을 사용하 여 선거벽보 게재용 사진을 제작한 경우 그 촬영비		○		통상적인 거래가격
	정당·후보자가 직접 선거벽보·선거공보·선거 공약서를 기획·도안한 경우		○		통상적인 거래가격

### 점자형선거공보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	점자형선거공보 작성비용			○ (부담)	
제 6 4 조 (선거 벽보)	점자형선거공보에 선거명, 선거구명, 후보자성명 외에 선거공보의 내용 또는 그림 등이 들어간 경우 그 기획·도안료, 인쇄료			○ (미부담)	
제 6 5 조 (선거 공보)	후보자측 잘못으로 점자형선거공보를 재제작한 경 우 잘못 제작된 점자형선거공보 원고 기획·도안 료, 인쇄료			○ (미부담)	
제 6 6 조 (선거공약서)	점자형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			○ (부담)	

### 현수막(비례대표선거 제외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6 7 조 ( 현 수 막 )	현수막 제작· 게시비· 철거비	○			
	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 (실거래가격을 보전함)	○			통상적인 거래가격
	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(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)	○			실거래 가격
	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 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현수막 등의 제작· 설치· 철거비	○			
	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이동 게시한 경우 현수막 제작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이동게시 에 소요된 통상적인 인건비	○			
	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· 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현수막 이동비용(위법비용)		○		
	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부득 이 개인소유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급한 사 용료(통상적인 거래가격)	○			

### 어깨띠, 윗옷· 모자 등 소품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6 8 조 ( 어 깨 띠 )	- 어깨띠 :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- 윗옷 :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 당의 기준금액 이내 - 모자, 마스크트, 표찰· 수기 그 밖의 소품 : 옷에 붙 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 의 크기		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6 8 조 (어깨띠)	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, 윗옷·모자 등 소품 착용재[후보자와 그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)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]가 사용한 어깨띠, 윗옷·모자 등 소품(이하에서 '어깨띠 등 소품' 이라고 함) 제작비	○			
	법 제6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용한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(위법비용)		○		
	선거운동용 윗옷을 교체 사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	○			
	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어깨띠 등 소품의 제작비	○			
	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(실제 착용가능한 수 범위내에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)	○			
	법 제68조에 의한 어깨띠 등 소품 이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 등 제작·구입비(위법비용)		○		

신문광고(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6 9 조 (신문광고)	신문광고 원고 기획·도안료	○			
	신문광고료(최저요금)	○			
	신문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	○			

방송광고(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7 0 조 (방송광고)	방송광고 기획비(방송광고의 기획은 기획사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기획비용)	○			
	방송광고의 제작비	○			
	방송광고료(최저요금)	○			
	방송광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		○		
	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·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	○			

방송연설(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, 자치구·시·군의 장 선거, 교육의원선거, 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7 1 조 (후보자등의 방송연설)	방송연설의 기획을 기획사에 의뢰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 기획비용	○			
	방송연설의 시연에 소요된 비용			○	
	방송연설의 제작비	○			
	방송연설 방송료(최저요금)	○			
	방송연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		○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7 1 조 (후보자등의 방송연설)	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방송연설 비용		○		
	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·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	○			
	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,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			○	
	방송연설용 원고료				
	-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·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(위법비용)		○		
	- 웅변학원·전문가 등에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	○			
	후보자 자신이 직접 한 분장의 재료 구입비, 분장 보조자 사례금, 이발·미용료 등 분장비			○	
	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에 지불한 분장비	○			
	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	○			
방송연설을 위한 후보자 양복, 구두, 안경 등 구입			○		
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CD·비디오 등 제작비			○		

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(비례대표선거 제외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7 9 조 (공개장소 에서 의 연설·대담)	공개장소 연설·대담차량 임차비				
	- 선거운동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의 공개장소 연설·대담차량 임차비	○	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7 9 조 (공 개 장 소 에 서 의 연 설 · 대 담)	- 전체 임차료에 선거운동기간개시일전이나 선거 일이후의 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차량 임차비가 포 함된 경우			○	선거운동 기간만 일할계산
	정당 · 후보자 ·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공개장소 연 설 · 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		○		통상적인 거래가격
	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 치 · 철거비	○			
	공개장소 연설 · 대담 차량의 홍보물 설치와 관련 한 기획 · 도안료	○			
	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		○		
	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차량 기사임	○			
	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차량 기사임 외에 별도 지급 한 기사 식대, 숙박비(위법비용)		○		
	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용 차량의 범퍼, 타이어, 라이 닝, 유리, 각종 오일 교환 등 수리 · 정비비			○	
	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용 차량의 고장으로 다른 차 량을 임차한 경우 그 홍보물을 교체하기 위해 지불 한 1일 동시에 2대를 임차한 경우의 임차비	○			1대분
	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차량 보호용 덮개			○	
	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용 연단 제작비	○			
	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한 공개 장소 연설 · 대담용 차량의 보험료			○	
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 전기 임차비	○		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7 9 조 (공 개 장 소 에 서 의 연 설 · 대 답)	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·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	○			
	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차량의 유류비, 유료통행 료,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도선료	○			
	확성장치·녹화기 임차비				
	- 무선마이크, 앰프,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	○			
	- 멀티큐브, 멀티비전, 점보트론,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	○			
	- 녹화기 운반용 차량 임차비	○			
	- 통상적인 차량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LED전 광판 운용기사 인부임 외에 별도 지급한 기사 인 부임(위법비용)		○		
	확성장치·녹화기 수리비				
	- 무선마이크, 앰프,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			○	
	- 멀티큐브, 멀티비전, 점보트론,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			○	
	인공위성을 이용한 녹화기의 영상물 방영에 소요 되는 비용인 위성채널 임대사용료, 위성중계·영 상촬영차량의 운영비와 인건비, 위성수신장치 설 비비용	○			
	로고송 제작비				
	- 로고송 사용에 필요한 저작재산권료, 저작권격 권료	○			
	- 로고송 제작업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직접 저 작재산권료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	○	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7 9 조 (공 개 장 소 에 서 의 연 설 · 대 담)	- 로고송 제작에 소요되는 스튜디오 사용료, 테이프 복사 등 제작비	○			
	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홍보물의 CF · 애니메이션 등 기획 · 도안료, 제작비	○			
	중앙당이 확정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선거사무소 · 선거연락소에 지원한 경우 그 차량임차료		○		통상적인 거래가격
	주차위반 과태료, 교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(사적비용)				정치자금 지출대상 아님
	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능력 향상을 위하여 웅변학원,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			○	
	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· 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(위법비용)		○		
	전문가에게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	○			
	공개장소의 연설 · 대담을 한 사람(연설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설 · 대담을 하게 한 경우와 일반인이 후보자 등의 지정을 받아 연설 · 대담을 한 경우를 포함)에게 지급하는 사례금(위법비용)		○		
	예비용 확정장치를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임차비	○			실제사용 일을 일 할계산
	공개장소 연설 · 대담차량에 설치된 녹화기를 통하여 방영하는 홍보물에 수화통역을 함께 방영하는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	○			
공개장소에서의 연설 · 대담을 하는 때에 수화 통역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수화통역을 한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	○				
연설문 코팅비			○		

## 전화, 전자우편 등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82조의4 (정보통신망 을 이용 한 선거운동)	전화 설치비				
	- 임시전화 설치·기본료	○			
	- 임시전화기 임차료	○			
	전화 통화료(선거운동용 전화기는 임시전화 사용 을 원칙으로 함)				
	- 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 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(이하에서 '통화료' 라고 함)	○			
	- 휴대전화 통화료(휴대전화 이용 문자메시지 전 송비 포함. 이하에서 같음)와 정보이용요금		○		
	- 후보자와 그 배우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 담하는 통화료	○			
	문자메시지 전송				
	- 문자(문자 외의 음성·화상·동영상 등은 제외)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	○			
	- 문자외의 음성·화상·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(위법비용)		○		
-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횟수 5회(예비 후보자로서 행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하되 보전 하지 아니함) 이내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 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 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	○		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82조의4 (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선거운동)	-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 수 5회(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)를 초 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과 전송에 소요된 비용 (위법비용)		○		
	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컴퓨터, CTI 전용전화기, 네트워크 장비, 소프트웨어 임차료	○			
	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 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	○			
	- 선거사무소를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여 전화 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선거운동용으로 사용 한 전화의 선거운동기간 중 통화료	○			
	- 일반사무용 또는 정당사무용으로만 사용한 전화 통화료			○	
	제3자가 정당,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,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선거사무장· 선거연락소 장·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화 통화료		○		
	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한 무전기 가입비· 임차 비· 사용료			○	
	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		○		
	전자우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의뢰 한 경우 그 전자우편발송요금	○			
	전자우편 디자인 및 편집비용	○			
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 전송을 통한 선거운 동을 위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	○				

### 인터넷 광고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82조의7 (인 터 넷 광 고)	인터넷 광고 기획·도안료	○			
	인터넷 광고용 배너·팝업 등 제작비	○			
	인터넷 광고비	○			
	인터넷 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	○			
	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는 사업자 등에게 지불한 광고비(위법비용)		○		

### 확성장치와 자동차(비례대표선거 제외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9 1 조 (확성장치 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 한)	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(교육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마다 각 5대 이내, 이하에서 같음) 선거벽보·선거공보 첨부· 철거비	○			
	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 하는 자동차에 첨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 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		○		
	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 는 자동차의 임차비·유류비·기사인건비·수리 비 등 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			○	
	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 하는 자동차에 첨부하는 선거벽보 코팅비	○			
	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 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 첨부·철거에 따른 차량 훼손 수리비			○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9 1 조 (확성장치 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 한)	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도서지역 이동시 도선비			○	
	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급한 임차료 외의 사례금(위법비용)		○		
	선거운동관계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료 대납비용(위법비용)		○		

### 공개장소 연설(비례대표선거 제외)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104 조 (연설회장에 서 의 소 란 행 위 등의 금지)	공개장소 연설·대담장 연단 주변에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·설치비	○			

### 여론조사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108 조 (여론조사의 결 과 공 표 금 지 등 )	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비			○	
	위법한 여론조사비(위법비용)		○		

### 기부행위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112 조 (기부행위의 정 의 등)	선거운동을 위하여 관할 구역을 방문할 때 법 제 112조에 의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	○			
	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	○			
	예비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		○		

### 선거일후 답례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118 조 (선거일후 답례금지)	선거일후 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가두방송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			○	
	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에 따른 인사서신 발송비용			○	

###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135 조 (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실비 보 상)	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·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·실비(숙박비 제외)	○			
	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(활동보조인은 1명만 둘 수 있음)에게 지급한 수당·실비			○ (부담)	

공직선거법 조항	지출항목	선거비용		선거비용외	비용으로 계산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135조 (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실비 보상)	선거사무원을 근무일을 달리하여 교체 선임·신고한 경우 교체 전·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된 수당·실비	○			
	근무일이 중복되도록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·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교체가능인원 범위 안에서 교체 전·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수당·실비(실비는 1일 분을 실제 선거운동에 종사한 시간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)를 지급하되, 보전하는 선거사무원 수당·실비는 1명분에 한함	○			
	후보자 숙박비			○	
	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·실비·식대 외의 활동비·격려금·회식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(위법비용)		○		
	후보자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·신고하고 지급한 수당·실비	○			
	선거사무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제12조제2항제2호 사목에 따라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 받음에 따른 법정 실비를 초과한 식사제공 비용	○			
	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·신고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가족에게 선거사무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그 식사비(다만,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인 경우에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됨)		○		
	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별도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급한 수당·실비		○		
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신분으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수당·실비(위법비용)		○	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135 조 (선거사무 관 계 자 에 대 한 수당과실비 보 상)	선거일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·실비		○		
	선거사무관계자외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지급한 활동비·격려금·식대·회식 비·교통비·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(위 법비용)		○		
	선거사무소 등에서 서류정리, 비품관리, 회계업무 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제공한 활동 비·격려금·식대·회식비·교통비·선물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한 이익제공에 소요된 비용(위법비용)		○		
	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취사비(단, 아래의 취사비 항목 총액이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비용 으로 미보전)				
	- 취사인부임	○			
	- 취사도구·주방기구 임차비(구입비는 미보전)	○			
	- 주식 및 부식 구입비	○			
	- 가스 등 연료비	○			
	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등 제3자가 정당, 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,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,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회계책임자와 통 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·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회식비, 식대(위법비용)		○		
	안전관리요원 명목의 인건비는 위법비용이나 경비 업체를 통한 단순 안전관리 의뢰비용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임		○		
우천시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일회용 비옷 구 입비용			○		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135 조 ( 선거 사무 관 계 자 에 대 한 수당과실비 보 상 )	선거사무장 등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이동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그 일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한 임차료 및 기사인부임	○			
	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인부임(위법비용)		○		
	회계사무보조자 수당 · 실비 기타 이익 제공 등(위법비용)		○		

### 과태료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261 조 ( 과 태 료 의 부과·징수 등 )	과태료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를 후보자가 대납한 경우 그 비용 (위법비용)		○		

### 대집행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제 271 조 ( 불법 시설물 등 에 대 한 조 치 및 대 집 행 )	대집행비용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대집행 비용을 후보자가 대납하는 경우 그 비용 (위법비용)		○		

기 타

공직선거법 조 항	지 출 항 목	선거비용		선 거 비용외	비용으로 계 산 할 대 상
		보전	미보전		
	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거나 납품이 지연되어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의 구입비용			○	
	선거권자 추천장 인쇄비용			○	
	후보자 본인의 정당활동 사진을 선거기간 중 각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한 비용			○	
	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되는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			○	
	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 발급을 위한 코팅비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			○	
	선거비용의 계좌입금·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선거비용 지출을 위한 수표발행 수수료			○	
	정치자금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비용			○	
	당선축하용 꽃다발 구입비			○	





## V.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결정내역

### 1.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선정기준

- ❖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산정대상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금액을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입차가격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함.
- ❖ 다만, 물품 등의 구입·제작에 특수재질·특수인쇄·특수조건이 부가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의 산정액외에 별도의 비용을 인정함.
- ❖ 정부의 기준요금이 있는 항목은 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으로 함.
- ❖ 점자형선거공보 점자인쇄비(천공방식)는 인쇄방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, 1,000매 이하 인쇄시에는 조사된 단순매당단가를, 1,000매 초과 인쇄의 경우에는 조사된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산출한 매당단가를 그 통상적인 거래가격으로 함.
- ❖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산정함에 있어 1,000원 미만의 단수는 1,000원으로 함. 다만,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단가 산출액 또는 특수재질 등이 부가되어 별도의 비용을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.

## 2. 세부 항목별 결정내역

### 1. 현수막 제작비

(단위 : 원)

구 분		규 격	재 질	산 정 액	비 고
거리게시용		m <sup>2</sup>	천	12,000	m <sup>2</sup> 당 단가, 설치·철거비 포함
외벽게시용		m <sup>2</sup>	천	21,000	
장 비 임차료	크레인	1일, 1-12층		321,000	
		1일, 13층이상		547,000	
	사다리차	1일, 1-12층		307,000	
		1일, 13층이상		408,000	
	로프이용료	1일, 1인		197,000	

### 2. 후보자 사진

(단위 : 원)

구 분		규 격	산 정 액	비 고
촬 영 비		76cm×52cm	447,000	
제 작 비	인쇄하는경우	76cm×52cm	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	
	인화하는경우	76cm×52cm	실소요비용	

### 3. 명함

(단위 : 원)

구 분	규 격	산 정 액	비 고
제 작 비		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	
제작용지가격	아트지(1연, 200g)	113,000	
	레자크지(1연, 200g)	250,000	
	휘라레(1연, 216g)	520,000	
	반누버(1연, 209g)	715,000	

#### 4. 선거벽보 · 선거공보 · 선거공약서

(단위 : 원)

구 분		규 격	산정액	비고
선 거 벽 보	기획 · 도안료	53cm×38cm	632,000	
	인쇄료	조달청 인쇄기준요율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		
선거공보(8면) · 지방의회의원 · 교육의원	기획 · 도안료	27cm×19cm	138,000	면당 단가
	인쇄료	조달청 인쇄기준요율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		
선거공보(12면) · 지방자치단체장 · 교육감	기획 · 도안료	27cm×19cm	145,000	"
	인쇄료	조달청 인쇄기준요율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		
선거공약서(16면) · 시 · 도지사 · 교육감	기획 · 도안료	27cm×19cm	155,000	"
	인쇄료	조달청 인쇄기준요율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		
선거공약서(12면) 자치구 · 시 · 군장	기획 · 도안료	27cm×19cm	150,000	"
	인쇄료	조달청 인쇄기준요율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		

\* 기획 · 도안료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기획 · 도안료 총액의 범위내에서 합산하여 보전 가능

#### 5. 신문광고

(단위 : 원)

구 분	규 격	산정액	비고
기획 · 도안료	1면, 4단	1,970,000	
	2~4면, 5단	1,938,000	

#### 6. 방송광고

(단위 : 원)

구 분	산정액	비고
텔레비전광고 기획 · 도안료	3,886,000	
라디오광고 기획 · 도안료	1,022,000	

## 7. 어깨띠

(단위: 원)

구분	규격	재질	산정액	비고
제작비	240cm×20cm	천	6,000	개당 단가

\* 특수재질·특수인쇄 등이 입증되는 경우 별도 비용 인정

## 8. 공개장소 연설·대담

(단위: 원)

구분	규격	산정액	비고
차량 임차료(1일)	1톤	205,000	기사인부임·유류비 포함
	1.5톤	252,000	"
	2.5톤	299,000	"
	5톤	379,000	"
기사인부임	1인, 1일	98,000	
휴대용 확성장치 임차료(1일)	10w	27,000	
	20w	35,000	
	30w	45,000	
차량용 확성장치 임차료(1일)	앰프1KW	226,000	앰프, 스피커, 마이크 포함
	앰프3KW	355,000	"
	앰프5KW	483,000	"
	앰프7KW	594,000	"
	앰프9KW	720,000	"

(단위 : 원)

구 분	규 격	산정액	비 고
차량래핑비	m <sup>2</sup>	71,000	
발전기 임차료(1일)	1KW	72,000	유류비 포함
	3KW	110,000	"
	5KW	133,000	"
	7KW	160,000	"
	9KW	192,000	"
차량용LCD전광판 임차료 (1일)	80인치	645,000	지방의회의원, 교육의원 (80인치이내)
	100인치	827,000	
	120인치	968,000	자치구·시·군장 (80~120인치이내)
	150인치	1,183,000	
	200인치	1,465,000	시·도지사, 교육감 (80~200인치이내)
차량용LED전광판 임차료 (1일)	80인치	1,104,000	지방의회의원, 교육의원 (80인치이내)
	100인치	1,360,000	
	120인치	1,627,000	자치구·시·군장 (80~200인치이내)
	150인치	1,960,000	
	200인치	2,422,000	시·도지사, 교육감 (80~200인치이내)
녹화물 제작비	30초품	3,547,000	
	60초품	4,838,000	
	120초품	5,569,000	
로고송저작재산권료	시·도지사(교육감)	1,000,000	
	시·도의원(교육의원)	250,000	
	자치구·시·군장	500,000	
	자치구·시·군의원	125,000	

### 9. 인터넷 광고

(단위: 원)

구 분		규 격	산정액	비 고
제 작 비	동영상	5초품	627,000	기획료 포함
		10초품	761,000	
		15초품	1,057,000	
		20초품	1,273,000	
	팝업	1편	488,000	
배너	1편	541,000		

### 10. 모자

(단위: 원)

구 분	규 격	산정액	비 고
썬캡형		5,000	개당 단가
일반형		5,000	
기호등 인쇄비		2,000	

### 11. 전화홍보시스템

(단위: 원)

구 분	산정액	비 고
일반전화홍보시스템(1세트)	639,000	노트북 pc, 전화단말기, 솔루션 포함
서버운영시스템(OS)	2,710,000	OS설치PC, 전화단말기 10대

## 12.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[지방자치단체부담비용]

### ❖ 선거공보 점자인쇄비(천공방식, 매당단가)

- 1,000매 이하 인쇄의 경우 : 매당 600원(양면)
- 1,000매 초과 인쇄의 경우 : 아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매당단가

(단위 : 원)

점자조판료(면당)	33,000		
점자제판료(양면 1판)	23,000	판당내쇄력	1,300매
지대(매당)	16		
점자인쇄료		점자제본료	
기준매수	양면1매당	기준부수	부 당
10,000매 초과	181	10,000부 초과	201
5,000매 초과	194	10,000부 이하	206
1,000매 초과	197	5,000부 이하	215
		1,000부 이하	223
		500부 이하	231
		300부 이하	240
		100부 이하	297



---

##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

---

**발 행** 2010년 3월  
**발 행 처**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  
**디 자 인** 에이투디자인  
02)2272-6443  
**인 쇄**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 
02)2683-0955

---